

#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

## 제·개정 연혁

- 1992년 12월 19일 전문개정
- 1993년 3월 11일 개정
- 2003년 1월 개정
- 2004년 7월 2일 개정
- 2006년 1월 6일 개정
- 2008년 3월 31일 개정
- 2014년 12월 29일 개정
- 2015년 8월 20일 개정
- 2015년 11월 12일 개정

### 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협회가 관장하는 각급 국가대표 축구선수단(이하 “대표단”이라 한다.)의 구성·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대표단은 법령 및 상위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### 제3조 (국가대표 선수의 구분)

① 대표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남·여 대표 선수 및 임원을 말한다.

1. 국가 대표단
2. U(Under)-23세 대표단
3. U-20세 대표단
4. U-17세 대표단
5.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대표단 (유니버시아드, 동아시아, 각급 연령별 남·여, 풋살대표단 등)

② ①항의 각급 대표단에 상비군을 둘 수 있으며, 그 운영과 관리는 대표단의 운영과 관리에 준한다.

### 제4조 (대표선수의 선발 및 해제)

- ① 각급 대표선수(이하 "선수"라 한다.)의 선발 및 해제는 감독의 건의에 따라 기술위원회가 승인한다. 단, 감독과의 계약에 따라 선수 선발 및 해제를 감독이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② 각급 대표선수 선발 시, 팀 경기력의 극대화를 위해 국내외 리그를 계속 관찰하여 감독의 전략과 전술을 잘 구현하고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하도록 한다.<2015. 8. 20. 개정>

**제5조 (대표단의 구성 및 인원)**

- ① 각급 대표단은 협회가 필요시 선임한 단장과 감독, 코치, 선수 및 지원인력으로 구성된다.
- ② 각급 대표단의 선수인원은 25명을 기준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적정인원을 증감을 할 수 있으며, 주요 국제대회 준비 등을 위하여 50명 내·외의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다.

**제6조 (성실의무 및 품위유지)**

각 급 대표단 및 대표단의 구성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,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<2015. 08. 20 개정>

**제7조 (특정 대표단의 지정)**

- ① 협회는 특정 축구단을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대표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①항의 경우 협회는 지정된 축구단의 장 또는, 그 축구단이 소속된 연맹단체의 장에게 대표단 구성을 위임할 수 있으며, 위임받은 단체의 장은 대표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체 없이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경기일정의 결정)**

협회는 산하연맹과 매년 주요경기 일정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며, 매년 11월 말까지 상호 합의를 통해 제반 경기(대회) 일정을 확정한다. 단, 12월 이후에 제기된 대회 또는 경기에 대해서는 FIFA 및 AFC 공식대회가 아닌 경우 추가 합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9조 (선수의 소집 및 통보)**

- ① 각급 대표단의 감독은 선수의 소집일정 및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0조에 규정된 기간에 국가대표단 및 U-23세 이하로 선발된 선수 및 그 소속 구단은 협회의 소집 요청에 따라야 한다.<2015. 8. 20. 개정>
- ③ 협회는 대표단 소집일정을 소집일 7일전까지 선수 및 소속팀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보하고, 소속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수의 참가 여부를 협회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③항의 서면 통보는 우편물 및 FAX를 포함하고, 전화 및 인터넷 이메일 등을 보조수단으로 한다.
- ⑤ (소집불참)해당 선수가 부상 등 합당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에 응할 수 없게 된 경우 소속팀은 ③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협회에 통보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협회는 결손된 선수 인원에 한하여 소집일 3일전까지 추가로 선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. 단, 불참 선수는 소속팀을 통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불참사유(부상시 진단서 첨부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소집기간

및 대표단 해산 후 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소속팀의 어떠한 공식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다.

⑥ (긴급소집) 각급 대표단의 감독은 소집기간 중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인원 결손으로 긴급히 선수의 추가 소집이 필요할 경우 경기시작 48시간 전까지 이를 소속팀에 요청할 수 있다.

### 제10조 (선수소집 개시일)

각급 대표단의 주요 대회별 선수소집 개시일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.

#### ① FIFA주최 대회

##### 1. 월드컵 대회

가. 예선 : FIFA International Match Calendar에 기재된 대회 및 경기일정상의 월요일까지.

여자팀의 경우 아시안컵 일정에 의한다.<2015. 8. 20. 개정>

나. 본선 : 개막일 3주전 월요일까지. 단 여자팀의 경우 개막일 30일 전까지

##### 2. U-17, U-20 월드컵대회

가. 예선 : 개막일 14일 전(AFC U-16, U-19 본선대회와 동일). 단, 여자팀의 경우 개막일 25일 전까지

나. 본선 : 개막일 30일 전. 단 남자팀 U-20 팀의 경우 15일 전까지는 소속팀 경기출전을 허용한다

##### 3. 세계 풋살 선수권대회

가. 예선 : 개막일 20일 전

나. 본선 : 개막일 30일 전

#### ② AFC주최 대회

##### 1. 아시안 컵 대회

가. 예선 : FIFA International Match Calendar에 기재된 대회 및 경기일정상의 월요일까지. 여자팀의 경우 경기 15일전까지<2015. 8. 20. 개정>

나. 본선 : 개막일 14일 전 (여자팀의 경우는 20일 전)

##### 2. 아시아 청소년(U-16, U-19) 선수권대회

###### 가. 예선

###### a. Home & Away 단일경기

Home : 경기 5일 전(여자팀의 경우는 10일 전)

Away : 경기 7일 전(여자팀의 경우는 10일 이상 15일 이내)

###### b. 단일/복수 지역대회(Centralized 방식) : 개막일 10일 전(여자팀의 경우는 20일 전)

나. 본선 : 개막일 14일 전(FIFA 세계대회 예선)이며, 여자팀의 경우는 개막일 25일 전까지 소집. 단 남자 U-19팀의 경우 10일 전까지는 소속팀 경기출전을 허용한다.

##### 3. 아시아 풋살 선수권 대회 : 개막일 20일 전 (FIFA 세계대회 예선)

## ③ 올림픽대회

## 가. 예선

## a. Home &amp; Away 단일경기

Home : 4일(경기일 포함, 여자팀의 경우는 10일 전)

Away : Home경기규정 + 거리에 따라 72시간 범위에서 추가(여자팀의 경우는 10일 이상15일 이내)

## b. 아시아 최종예선

(타 대륙과의 Play-off 포함)

Home : 경기 5일 전(여자팀의 경우는 10일 전)

Away : 경기 8일 전(여자팀의 경우는 10일에서 15일 이내)

## c. 단일/복수 지역대회(Centralized 방식) : 개막일 15일 전(여자팀의 경우는 25일 전)

나. 본선 : 개막일 30일 전(※15일 전까지는 소속팀 경기출전 허용)

다. 올림픽대회 여자 예선이 아시아 여자 선수권대회 본선을 겸할 시는 여자아시안컵대회 소집일정(개막일 25일 전)에 준한다.

## ④ 친선대회 및 경기

## 1. 친선대회

## 가. 남자대표팀

FIFA International Match Calendar에 기재된 대회 및 경기일정상의 월요일까지.<2015.

## 8. 20. 개정&gt;

## 나. 여자대표팀

국내개최 : 7일 전까지

국외개최 : 7일 전까지

## 2. 친선경기

## 가. 남자대표팀

FIFA International Match Calendar에 기재된 대회 및 경기일정상의 월요일까지.<2015.

## 8. 20. 개정&gt;

## 나. 여자대표팀

국내개최 : 7일 전까지

국외개최 : 7일 전까지

## ⑤ 기타 대회

1. 동아시아연맹 대회 : 개막일 7일 전(여자팀의 경우는 15일 전까지)
2. 아시안게임 본선 : 개막일 14일 전(여자팀의 경우는 개막일 20일 전)이며, 남자팀의 경우 10일 전까지 소속팀 경기출전을 허용한다.
3. 유니버시아드 대회(프로선수 제외) : 개막일 10일 전 (여자팀의 경우는 15일 전까지)
4. 동아시아 게임(프로선수 제외) : 개막일 10일 전 (여자팀의 경우는 15일 전까지)
5. 대륙간컵 등 기타대회의 경우 별도 협의에 의한다.
- ⑥ 기타 위의 각항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의 소집일은 기술위원회가 이를 별도로 정한다.

### 제11조 (훈련 보강기간)

- ① 월드컵 본선에 한하여 해당 해의 1월, 2월 중에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훈련 보강 기간을 가질 수 있다.
- ② 올림픽 및 세계청소년(U-20)대회 본선에 한하여 해당 대표팀은 해당 해의 1월, 2월 중에 3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훈련 보강 기간을 가질 수 있다.
- ③ 성인 여자 대표팀은 대회출전여부와 관계없이 국내대회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 30일, 여자 U-20, U-17 대표팀은 40일 이내의 훈련보강기간을 각 가질 수 있다.

<2015. 8. 20. 개정>

### 제11조 (감독, 코치 등의 선임)

- ① 각급 대표단의 감독,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'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'에 따라 기술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.
- ② 협회는 ①항의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,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협회는 각급 대표단의 감독, 코치 및 트레이너를 전임으로 선임할 경우 전임계약을 체결한다.
- ④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급 대표단에 단장을 선임할 수 있다. 단장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단장으로서의 능력과 덕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
- ⑤ 지도자 선발은 공개선발 또는 우수지도자의 확보를 위해 특별선발 할 수 있으며, 기술위원회 추천 후 이사회에서 승인한다. <2015. 8. 20. 개정>
- ⑥ 선발과정 및 결과는 개인정보를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까지 공개할 수 있다.

<2015. 8. 20. 개정>

### 제13조 (지도자의 책무)

- ① 단장은 해당 대표단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, 팀의 행정 및 대외적 역할을 위한 직무를 수행한다.
- ② 각급 대표단의 감독, 코치 등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대표단 소집훈련 대회참가 선수선발 건의<2015. 8. 20. 개정>
2. 선수단 관리,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
3. 선수의 상벌, 경기력, 부상 등으로 인한 교체 건의
4.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<2015. 8. 20. 개정>
5. 각종 국내·외 참가 대회의 훈련 및 경기결과 보고
6. 기타 대표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사항의 건의

#### 제14조 (선수의 의무)

- ① 각급 대표단에 선발된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금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.
  - ② 대표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    1.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훈련 및 소집에 응할 의무
    2. 감독 및 코치의 지시에 순응할 의무
    3. 대표단의 규율을 준수할 의무
    4. 성실한 훈련태도를 견지할 의무
    5. 품위유지와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 유지 및 선수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
- <2015. 8. 20. 개정>

#### 제15조 (보고서)

- ① (감독보고서) 대표단의 감독은 대회 또는, 경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감독보고서를 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(기술분석보고서) 기술위원회는 대표단이 참가하는 대회 또는, 경기에 기술위원을 파견하고, 기술위원은 대회 및 경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기술분석보고서를 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①항 및 ②항의 보고서 양식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술위원회가 이를 별도로 정한다.

#### 제16조 (포상)

- ① 각급 대표단의 지도자 및 선수 등에 대한 포상은 협회 포상 규정에 의한다.
- ②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1. 대표단의 운영 및 조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
  2.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크게 공헌한 자
  3. 선수의 훈련 및 관리에 전념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자
  4. 평소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기력이 뛰어나며, 대표단의 인화단결에 모범을 보인 자
  5. 기타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#### 제17조 (징계 및 결격사유)

- ① 각급 대표단의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징계는 협회 징계 규정에 의한다.
- ② 징계 양정을 위하여 기술위원회는 징계의 건의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.
-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징계대상으로 상정한다.
  1. 고의로 대표단의 명예를 훼손한 자

2. 대표단 운영규정을 위반하였거나, 기타 훈련규범을 지키지 아니한 자
-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.
  1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3. 대한축구협회에 징계위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
  4. 고의적으로 폭력행위 한 선수 또는 지도자로서 1년 이상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5.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성추행 등 성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단,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
6. 승부조작, 불공정 행위(부정선발, 담합, 금품수수)와 강간,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훈련 제외 및 영구결격
7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<2015. 8. 20. 개정>

### 제18조 (격려금)

- ① 격려금 지급대상 대표단은 아래 각호와 같다.
  1. 남·녀 월드컵 대표단
  2. 남·녀 아시안컵 대표단
  3. 남·녀 올림픽 대표단
  4. 남·녀 동아시아컵 대표단
  5. 남·녀 아시안게임 대표단
- ② 위 1항 대표단의 구성원(감독, 코치, 선수 및 단장 등 지원스텝)에 대해서는 협회 예산, 대회의 규모, 성적, 공헌도를 감안, 종전 관례를 참고하여 이사회에 보고 후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U-20 이사 각급 남·녀 대표단(감독, 코치, 지원스텝에 한함)의 경우에는 대회 성적,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해당 대표단의 미성년 선수에게는 포상품 또는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.<2015. 8. 20. 개정>

### 제19조 (수당 및 실비의 지급)

- ① 수당이라 함은 각급 대표단의 소집, 훈련, 경기에 대하여 협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일비를 말한다.
- ② 실비라 함은 각급 대표단 선수가 소집, 훈련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협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③ 협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표단원에게 각종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③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실비의 종류, 금액 및 지급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.
- ⑤ 국고보조 등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지급한다.
- ⑥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20조 (대표단원의 용품착용)**

- ① 대표단의 감독, 코치 등을 포함한 임원진과 모든 선수는 대표단의 공식훈련과 경기중 또는, 본 회의 요청에 따라 대표단원의 자격으로 공식행사 등에 참가할 경우 협회로부터 지급받은 용품을 착용하여야 한다.
-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지급되는 용품과 다른 용품을 착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수는 사전에 사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, 협회의 지시 및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**제21조 (퍼블리시티권)**

- ① 대표단원 개인의 퍼블리시티권 및 대표단원들의 집합적 퍼블리시티권은 원칙적으로 협회가 보유한다.
- ② 대표단원은 본회의 지시에 의한 홍보 및 교육활동 또는, 경기 종료후 각종 촬영 및 인터뷰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대표단원이 자신의 대표팀 퍼블리시티권을 이용하여 각종이벤트, 방송 및 광고 출연, 출판 등을 할 때에는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본 조의 퍼블리시티권, 집합적 퍼블리시티권 및 대표 팀 퍼블리시티권 등에 관한 정의는 협회 마케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

**제22조 (선수단의 보험)**

- ① 구단이나 팀은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소속 선수에 대하여 국제축구연맹 규정(FIFA 선수이적 및 신분제 관한 규정 부록1 제2조 ③항)에 따라 대표단 소집기간 중의 부상,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② 협회는 대표단 소집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선수의 부상,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하여 내국인 보험법에 따라 협회의 예산 범위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**제23조 (관련 규정의 변경시 적용)**

본 규정과 달리 FIFA, AFC에서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개정될 시에는 해당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부 칙**

1. 각급 대표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08. 4. 1.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. 1. 1.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5. 8. 20. 개정)**

**제1조(시행일)**

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5. 11. 12. 개정)**

**제1조(시행일)**

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